

이사회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‘부사장, 전무, 상무,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’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운영

제6조(회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마다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 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재무제표의 승인
 - (4) 정관의 변경
 - (5) 자본의 감소
 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(9) 이사,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 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 - (12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
 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- (14) 이사의 보수
 - (1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 - (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 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2. 경영에 관한 사항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2) 공동대표의 결정
 - (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(4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,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 - (6) 지배인,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 - (7) 이사회 규정, 감사위원회 규정, 준법통제기준의 개폐
 - (8) 지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- (9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
(10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(1) 자산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입/처분 및 양수/양도

(2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차입

(3)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

(4)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

(5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
(6) 준비금의 자본전입

(7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

(8) 자기주식의 취득/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/해지

(9) 자기주식의 소각

(10)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투자, 시설 증설 또는 별도의 공장의 신설

(11)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

(12)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인(개인/법인)에 대한 대여(금전 또는 유가증권)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
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
5. 기타

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
(2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
3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하여졌거나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③ 기타 법령, 공시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의1(위임)

- 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를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 시킬 수 있다.

제11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4장 기타

제12조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5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, 이사회 의장이 재무·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자 중에서 정한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6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